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 3. 18 선고 2020가단202026(본소), 2021가단20118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 · 계약금 반환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남

피고(반소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용, 강주원, 임지연, 임채훈, 김미경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경일, 정인성

변 론 종 결 2021. 10. 5.

판 결 선 고 2022. 3. 1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56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부터 2022. 3.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91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년 2월 말경 원고의 배추에 관하여 보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는 2019. 2. 27.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고가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임차한 저온창고(이하 ‘이 사건 제1 창고’라 한다)에 배추 3,900포기(5톤 화물차량 1대 분량)를 보관하였고, 2019. 3. 1.경 같은 면에 있는 E 소유의 저온창고(이하 ‘이 사건 제2 창고’라 한다)에 배추 3,900포기(5톤 화물차량 1대 분량, 이하 ‘이 사건 제2 배추’라 한다)를 보관하였으며, 2019. 3. 2.경 이 사건 제1 창고에 배추 7,800포기(5톤 화물차량 2대 분량, 이하 2019. 2. 27.경 이 사건 제1 창고에 보관된 3,900포기와 함 ‘이 사건 제1 배추’라 한다)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는 2019년 5월 말경 이 사건 제1 창고에 보관된 배추를 작업한 후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이를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19년 5월말 경 F에 이 사건 제1 배추 중 일부를 판매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배추를

처분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6,710,400원[= 27,532,800원(= 피고가 이 사건 제1 배추를 작업하여 그 중 1/4 분량을 F에 판매하여 받은 대금 6,883,200원 × 4) × 4(이 사건 각 배추의 분량)/3(이 사건 제1 배추의 분량)]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배추의 보관료 320만 원(= 5톤 트럭 1대당 3개월간 보관료 80만 원 × 4대)과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운송료 200만 원[= 180만 원(= 화물트럭 3대 × 1차당 60만 원) + 80만 원(= 화물트럭 1대 × 1차당 80만 원) - 원고가 지급한 60만 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1,510,400원(= 손해배상금 36,710,400원 - 보관료 320만 원 - 운송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각 배추는 비교적 저장기간이 장기간인 ‘청남’이라는 품종의 배추이고, 2019년 6월경 반출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피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각 배추가 긴급하게 처분하여야 할 정도로 부패할 염려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배추의 상태 등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각 배추에 관한 긴급처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반소로서 구하는 비용상환채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3) 피고가 반소로서 주장하는 비용상환채권 중 하차비용 50만 원은 원고가 이미 공제를 하고 있는 보관료 200만 원에 포함되는 돈이고, 피고 주장의 보관료 540만 원에 관하여도 원고가 이미 공제를 하고 있는 보관료 2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외에도 피고가 주장하는 각종 비용상환채권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이를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배추는 일반적으로 2달 이상 저온창고에 보관하기가 어려운데, 원고가 이 사건 각 배추를 보관시킨 2019년 3월경으로부터 2달이 경과한 2019년 5월경이 되어서도 원고가 이를 반출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배추를 반출해 갈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반출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배추를 반출해 갈 것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배추가 부패할 염려가 있다는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배추를 긴급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상환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피고는 상법 제168조, 제108조에 따라 2019년 5월 말경 이 사건 제1 배추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작업을 한 후 5톤 트럭 2대 분량(이 사건 제1 창고에 보관된 이 사건 제1 배추 중 2/3 분량 가량)을 F에 매도하였고, 그 무렵 F로부터 그 대금으로 6,883,200원을 지급받았다. 나아가 이 사건 제2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제2 배추는 피고가 이를 처분하지 아니하였고, 납품처를 찾지 못하여 그대로 폐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6,883,200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3) 한편,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배추의 보관을 위하여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운송료 2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제1 배추와 관련하여 피고는 하차비용 50만 원, 보관료 540만 원(= 이 사건 제1 창고 30평 × 1평당 1개월 임료 6만 원 × 3개월), 이 사건 제1 배추 작업비용 100만 원, 이 사건 제1 배추를 작업한 후 F까지 운송한 비용 110만 원 합계 800만 원(= 50만 원 + 540만 원 + 100만 원 + 110만 원)을 2019. 12. 11. 이 사건 제1 창고의 임대인인 D에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제1 배추를 작업한 후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쓰레기 폐기장소인 전북 무주군 G의 소유자인 H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2 배추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2 창고 소유자인 E에게 3개월간 보관료로 1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합계 1,280만 원(= 운송료 200만 원 + 이 사건 제1 배추와 관련하여 D에 지급한 합계 800만 원 + 이 사건 제1 배추의 쓰레기 처리비용 100만 원 + 이 사건 제2 배추의 보관료 180만 원)의 비용상환채권을 갖는바, 원고의 위 6,883,200원의 반환채권과 상계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5,916,800원(= 1,280만 원 - 6,88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상법 제160조), 창고업자인 피고가 배추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1)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제출한 자료(2021. 6. 18.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배추의 보관기간은 30일에서부터 3.5개월로 다양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창고에 보관을 의뢰한 이 사건 각 배추의 보관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 또한 부족한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배추를 처분할 무렵에 이 사건 각 배추가 부패하였거나 부패할 염려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배추의 보관기간이 2개월가량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창고 입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날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배추의 출고를 요청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④ 창고업자는 임치물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는데(상법 제168조, 제108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배추에 부패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원고에게 통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제1 배추를 F에 매도한 2019년 5월 말경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배추가 부패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배추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배추의 멸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입은 손해는 처분된 이 사건 각 배추의 가액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제1 배추의 1/3을 도려내는 작업을 한 후 2/3 부분을 F에 판매하고 F로부터 6,883,2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배추의 가액은 13,766,400원[$(= 6,883,200\text{원} \times 3/2) \times 4$ (이 사건 각 배추의 분량)/3(이 사건 제1 배추의 분량)]이라고 할 것이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배추를 처분할 당시 이 사건 각 배추의 가액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8,566,400원(= 손해배상금 13,766,400원 - 보관료 320만 원 - 운송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본소에 대한 항변을 겸하여)

1) 운송료 200만 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배추의 운송료 중 2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운송료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는 본소 청구금액에서 이 금액을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다).

2) 이 사건 제1 배추 하차비용 50만 원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배추의 하차비용으로 50만 원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제1 배추의 하차비용으로 5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반소 청구 및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제1 창고의 보관료 540만 원 및 이 사건 제2 창고의 보관료 180만 원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을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① 피고는 이 사건 제1 창고의 보관료가 540만 원(= 이 사건 제1 창고 30평 × 1평당 1개월 임료 6만 원 × 3개월), 이 사건 제2 창고의 보관료가 18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보관료 또는 이를 산정하는 창고의 평수, 1평당 임료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제1 창고에 관한 보관료를 포함하여 2019. 12. 11. D에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1 배추의 보관 시기와 위 대금의 지급시기, 위 일자에 피고는 D에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지급한 돈에 어떠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당초 2020. 10. 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제1 창고의 보관료가 4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제2 창고의

보관료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2020. 11. 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제1 창고의 보관료가 540만 원, 이 사건 제2 창고의 보관료가 180만 원이라고 그 주장을 변경한 점, ④ E의 사실확인서(을 제9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제2 창고의 보관료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창고의 보관료가 540만 원, 이 사건 제2 창고의 보관료가 180만 원이라거나 피고가 이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원고는 본소 청구금액에서 이 사건 각 배추의 보관료로 320만 원을 인정하면서 이를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다].

4) 이 사건 제1 배추 작업비용 100만 원, 위 작업 후 F까지 운송한 비용 110만 원, 위 작업 후 쓰레기 처리 비용 100만 원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제1 배추를 작업하는 비용이 100만 원이고, 위 작업 이후 F까지 운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10만 원이며, 위 작업 후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② 피고는 위 작업비, 운송비를 포함하여 2019. 12. 11. D에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1 배추의 처분 시기와 위 대금의 지급시기, 위 일자에 피고는 D에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지급한 돈에 어떠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쓰레기 처리비로 H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배추의 작업비용이 100만 원, 위 작업 후 F까지 운송비용이 110만 원, 위 작업 후 쓰레기 처리 비용이 100만 원이라는 점 또는 피고가 이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반소 청구 및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가 위 금액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가. 1) 가)항에서 살펴본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상법 제168조, 제108조에서 정한 긴급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비용에 관한 상환 청구를 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8,56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7. 3.부터(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2. 3.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편병호

1)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이 채무불이행에 기한 것인지, 불법행위에 기한 것인지가 다소 불분명하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16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 피고 또한 반소 및 본소에 대한 항변으로써 상법 제168조, 제108조에 기한 비용상환청구를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 속에는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선택한다.